

—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, 주민감사 청구의 활성화 및 제도 보완으로 청구인수를 법령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「 190 명 이상」으로 개정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
[도 감사관실 - 5545(2005. 9. 6)호와 관련)]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소송제가 2006. 1. 1 전면시행됨에 따라
- 이와 관련된 조례중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어 현행 「300명이상」으로 된 것을 「190명이상」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된 법령에 부합토록 하였음.